



## 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지난해 제46회 임시회시 고성군상징물조례안과 함께 상정되었다가 고성군상징물  
조례안이 부결됨으로서 이와 필연적 관련이 있는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  
에관한조례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종 홍보처에 동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 
고룡이상표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

● 답 : 고성군 규정으로 처리하였음.

○ 문 : 그러면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어려우면 고성군 규정으로 고성군수가 임의 처리  
해도 무방한지

● 답 : 절차상 잘못이 있었음.  
이해바람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○ 1997. 3.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였음.